

### 3. 住宅供給에 關한 規則 改正

건설부령 제 464 호  
1990. 5. 26 공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본문단서중 “제 1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 1 호 제 3 호 및 제 9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제 6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 6 호 및 제 8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고, 동 조에 제 8 호 및 제 9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직접 건설하거나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주대책용으로 택지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다만, 이주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20 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 세대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보험회사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주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부장관

이 인정한 것.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20 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 세대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제 5 중 “1년의 범위”를 “10월의 범위”로, “13층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1년에 12층을 넘는 매층당 45일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대주임을 입증하는 서류(민영주택의 경우는 제 13 조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2.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민영주택의 경우는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 및 제 13 조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제 11 조제 1 항제 7 호중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 11 조에 제 6 항 및 제 7 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⑥민영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로서 제 1항제 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 1항 내지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주택의 공급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은 취소한다.

제 13 조제 1 항 본문단서중 “특별한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 및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 한다.

제 13 조제 1 항제 1 호 본문중 “12회”를 “24회”로 한다.

제 13 조제 1 항제 1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4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 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이 경우 경쟁이 있는 때에는 2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세대주의 처(처가 세대

대주인 경우에는 세대주 본인을 말한다)의 연령이 34세가 되기전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영구불입시술을 한 자(이하 “영구불입시술자”라 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선정한다.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이 경우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외취업근로자(기능공 및 일반노무자로서 계속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영구불입시술자 및 무사고운전자(15년 이상 사고없이 계속 취업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선정한다.

(4) 납입회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당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나. 4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인 자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인 자

(3) 납입회수가 많은 자. 이 경우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외취업근로자, 영구불입시술자 및 무사고운전자를 우선 선정한다.

(4) 부양가족이 많은 자

(5) 당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제 13 조제 1 항제 2 호중 “3회”를 “12회”로, “12회”를 “24회”로 한다.

제 13 조제 2 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그 건설량의 50퍼센트를 제 1 순위에 해당하는 자중 35세이상이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에게 우선 공급한다.

제 13 조제 2 항제 1 호중 “9월”을 “2년”으로, “(기당첨자를 제외한다)”를 “[기당첨자 및 1세대(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주택이상 소유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 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예치한 후 1년이 경과된 자(2년이 경과된 자중 기당첨자 및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를 포함한다)

제 13 조제 3 항제 1 호중 “기당첨자를 제외한다”를 “기당첨자 및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 제 2 호중 “2년이 경과된 자중 기당첨자를 포함한다”를 “2년이 경과된 자중 기당첨자 및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 13 조에 제 7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2주택이상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입주자선정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속

하는 수도권·직할시 또는 도와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한다.

제 14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청약저축 또는 부금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납입한 경우 당해 연체·납입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날(1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납총일수에는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납입금에 대한 선납일수와 연체총일수를 초과하는 선납일수는 산입되지 아니하며, 납입횟수에는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납입금에 대한 선납횟수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frac{\text{회차별납입인정일} = \text{약정납입일} + \text{연체총일수} - \text{선납총일수}}{\text{납입횟수}}$$

제 15 조제 1 항에 제 5 의 2 호 및 제 12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 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면적이 90 제곱미터이상인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자(수인이 공동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소유자중 1인) 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

1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

제 17 조제 1 항목 “(이하 “당첨자”라 한다)”를 “(제 6 조제 7 항 또는 제 11 조제 7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이 무효로 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된 자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그 당첨이 무효로 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당첨자”라 한다.)”로 한다.

제 18 조제 2 항목 “동·호수를 결정한 후”

를 “동·호수를 결정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로 하고, 동조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임대주택의 경우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 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 퍼센트,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40 퍼센트로 하되, 청약금은 입주자모집시에 받고, 계약금은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하게 될 주택의 동·호수를 결정한 후 계약시에 받으며, 중도금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가 도달할 때에 받아야 하고, 잔금은 입주시나 준공일을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중도금을 받을 수 없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b>제 3 조(적용대상)</b> 이 규칙은 사업주체가 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u>제 1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 4 조제 1 항 및 제 17 조의 규정만을, 제 4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 4 조제 1 항</u></p>	<p><b>제 3 호(적용대상)</b> .....</p> <p>.....</p> <p>.....</p> <p>.....</p> <p>.....</p> <p>.....</p> <p><u>제 1 호 제 3 호 및 제 9 호에 해당하는 주택</u>.....</p> <p>.....</p> <p>.....</p>

현행	개정안
<p>및 제 20 조의 2 의 규정만을, 제 6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 17 조의 규정만을 적용한다.</p>	<p>..... 제 6 호 및 제 8 호에 해당하는 주택.....</p>
<p>1. - 7. (생략)</p>	<p>1. - 7.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8.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직접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주대책용으로 택지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다만, 이주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20 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 세대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lt;신설&gt;</p>	<p>9. 보험회사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주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것.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20 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 세대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7 조 (입주자의 모집시기 및 조건) ① ② - ④ (생략) ⑤ 사업주체는 당해 분양대상인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분양계약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범위 안에</p>	<p>제 7 조 (입주자의 모집시기 및 조건) ①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10 월의 범위 .....</p>

현행	개정안
<p>서 입주일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u>13층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1년에 12층을 넘는 매층당 1월을 더한 기간</u>(동절기가 2회이상 겹치는 등 공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의 범위내에서 입주일자를 정할 수 있다.</p>	<p>..... <u>11층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10월에 10층을 넘는 매층당 45일을 더한 기간</u>.....</p>
<p><b>제 11 조 (제출서류)</b> ①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대주임을 입증하는 서류</li> <li>2.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u>국민주택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u>)</li> <li>3. - 6. (생략)</li> <li>7. <u>인감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u></li> <li>8. (생략)</li> </ol> <p><u>&lt;신설&gt;</u></p>	<p><b>제 11 조 (제출서류)</b> 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민영주택의 경우는 제 13 조제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u>)</li> <li>2. .... (<u>민영주택의 경우는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 및 제 13 조제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u>)</li> <li>3. - 6. (현행과 같음)</li> <li>7. <u>인감증명서</u></li> <li>8. (현행과 같음)</li> </ol> <p>⑥ <u>민영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로서 제 1 항제 1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 13 조 (일반공급의 방법) ①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있어서는 종합점수제 등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적용할 수 있다.</p> <p>1. 제 1 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 월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u>12 회 이상</u> 납입한 자〔제 1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명단이 수록된 자(이하 이 조에서 “기당첨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다만, 제 1 순위 해당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순차로 입주자를 선정한다.</p> <p>가. 4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p> <p>(1) <u>저축총액이 많은 자</u></p> <p>(2) <u>당해 주택건설지역 안에서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인 자.</u></p>	<p>⑦ 제 1 항 내지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주택의 공급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은 취소한다.</p> <p>제 13 조 (일반공급의 방법) ①..... ....., <u>영구임대주택 및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u> .....</p> <p>1. .... ..... <u>24 회</u> .....</p> <p>가. .... .....</p> <p>(1) <u>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 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u></p> <p>(2) <u>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u></p>

현행	개정안
<p>이 경우 경쟁이 있는 때에는 2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세대주의 처(처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주 본인을 말한다)의 연령이 34세가 되기 전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영구불임시술을 한 자(이하 “영구불임시술자”라 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선정한다.</p>	<p>..... ..... ..... ..... ..... ..... ..... .....</p>
<p>(3) <u>납입회수가 많은 자.</u> 이 경우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외취업근로자(기능공 및 일반노무자로서 계속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영구불임시술자 및 무사고운전자(15년이상 사고없이 계속 취업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선정한다.</p>	<p>(3) <u>저축총액이 많은 자.</u> ..... ..... ..... ..... ..... ..... .....</p>
<p>(4) <u>부양가족이 많은 자</u></p>	<p>(4) <u>납입회수가 많은 자</u></p>
<p>(5) <u>당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u></p>	<p>(5) <u>부양가족이 많은 자</u></p>
<p>나.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p>	<p>(6) <u>당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u></p>
<p>(1) <u>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인 자</u></p>	<p>나. .... (1) <u>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인 자</u></p>
<p>(2) <u>납입회수가 많은 자.</u> 이 경우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외취업근로자. 영구불임시술자 및 무사고 운전자를 우선 선정한다.</p>	<p>(2) <u>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인 자</u></p>



현행	개정안
<p>(3) <u>부양가족이 많은 자</u></p> <p>(4) <u>당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u></p> <p>2. 제 2 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u>3회</u> 이상 납입한 자 ( <u>12회</u> 이상 납입자중 기당첨자를 포함한다 ). 다만,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 1 순위의 경우에 준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p> <p>3. ( 생략 )</p> <p>② 민영주택의 입주자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p> <p>1. 제 1 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예치한 후 <u>9월</u>이 경과된 자 ( <u>기당첨자를 제외한다</u> )</p> <p>2. 제 2 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로</p>	<p>(3) <u>납입회수가 많은 자. 이 경우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외취업근로자. 영구불입시술자 및 무사고운전자를 우선 선정한다.</u></p> <p>(4) <u>부양가족이 많은 자</u></p> <p>(5) <u>당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u></p> <p>2. .... ..... <u>12회</u> ... ..... ( <u>24회</u> ..... ..... ..... .</p> <p>3. ( 현행과 같음 )</p> <p>② ..... ..... . <u>다만,</u> <u>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은 그 건설량의 50퍼센트를 제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 35세이상이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 ( 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 ) 에게 우선 공급한다.</u></p> <p>1. .... ..... ..... <u>2년이</u> ..... [ <u>기당첨자 및 1세대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주택이상 소유자를 제외한다</u> ]</p> <p>2. ....</p>

현행	개정안
<p>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예치한 후 <u>3월이 경과된 자(9월이 경과된 자 중 기당첨자를 포함한다)</u></p> <p>3. (생략)</p> <p>③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한 자(이하 “부금가입자라 한다)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에 대하여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순위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청약예금의 예치액이 차등적용되는 다른 주택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예치액에 도달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순위가 적용된다.</p> <p>1. 제 1순위 :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된 자(<u>기당첨자를 제외한 다</u>)</p> <p>2. 제 2순위 :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된 자(<u>2년이 경과된 자 중 기당첨자를 포함한다</u>)</p> <p>&lt;신설&gt;</p>	<p>..... ..... <u>1년이.....(2년이 경과된 자 중 기당첨자 및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를 포함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 ..... ..... ..... ..... ..... ..... ..... ..... ..... .....</p> <p>1. .... ..... (<u>기당첨자 및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를 제외한 다</u>)</p> <p>2. .... ..... (<u>2년이 경과된 자 중 기당첨자 및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를 포함한다</u>)</p> <p><u>⑦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2주택이상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입</u></p>

현행	개정안
<p>제 14 조 (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등 )</p> <p>① <u>청약저축 또는 부금가입자가 월납입금의 납입을 연체한 경우에는 매월 약정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체총일수에서 선납 총일수를 차감한 순연체일수를 총납입회수로 나눈 일수(이 경우 1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만큼 실제납입일보다 늦게 월납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납총일수는 연체총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u></p> <p>② ( 생략 )</p> <p>제 15 조 ( 특별공급의 방법 ) ① 국민주택 등은 그 건설량의 10 퍼센트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정한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 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p>	<p>주자 선정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속하는 수도권·직할시 또는 도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한다.</p> <p>제 14 조 (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등 )</p> <p>① <u>청약저축 또는 부금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납입한 경우 당해 연체·납입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날(1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납 총일수에는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납입금에 대한 선납일수와 연체총일수를 초과하는 선납일수는 산입되지 아니하며, 납입횟수에는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납입금에 대한 선납횟수는 산입되지 아니하다.</u></p> $\frac{\text{회차별납입인정일} = \text{약정납입일} + \text{연체총일수} - \text{선납총일수}}{\text{납입횟수}}$ <p>② ( 현행과 같음 )</p> <p>제 15 조 ( 특별공급의 방법 ) ①.....  .....  .....  .....  .....  .....  .....</p>

현행	개정안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6. - 11. (생략)</p> <p><u>&lt;신설&gt;</u></p>	<p>1. - 5. (현행과 같음)</p> <p><u>5의 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자(수인이 공동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소유자 중 1인)</u> <u>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u></p> <p>6. - 11. (현행과 같음)</p> <p><u>1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u></p>
<p><b>제 17조 (입주자의 관리)</b> ①사업주체가 청약예금 실시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동 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중 제 3조제 1호, 제 3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대하여 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이하 “당첨자”라 한다)와</p>	<p><b>제 17조 (입주자의 관리)</b> ①…………… …………… …………… …………… …………… …………… …………… …………… …………… …………… (제 6 조제 7항 또는 제 11 조</p>

현행	개정안
<p>각각 그 배우자의 명단을 별지 제 4 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택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당첨자가 청약저축 가입자일 때에는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외의 지역에서도 그 명단을 주택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u>제 7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이 무효로 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된 자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그 당첨이 무효로 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당첨자”라 한다</u>)…</p> <p>.....</p> <p>.....</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 18 조 (입주금의 납부) ① (생략)</p> <p>②분양주택의 경우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 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 퍼센트, 중도금은 60 퍼센트로 하되, 청약금은 입주자모집시에 받고 계약금은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하게 될 주택의 <u>동·호수를 결정한 후</u> 계약시에 받아야 하며, 중도금은 제 3 항의 시기를 기준으로 전후 각 2 회 이상 분할하여 받되 최초의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 월이 경과한 후 받을 수 있으며 잔금은 입주시나 준공일을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p> <p>③ (생략)</p> <p>④임대주택의 경우 청약금은 <u>당해주택의 임대보증금의 10 퍼센트</u>, 계약금은 <u>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 퍼센트</u>로 하고, 잔금은 입주시나 준공일을 기준으로 받아야 하며, 중도금은 이</p>	<p>제 18 조 (입주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p> <p>.....<u>동·호수를 결정</u> <u>정한 날부터 7 일이 경과한 후</u>.....</p> <p>.....</p> <p>.....</p> <p>.....</p> <p>.....</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임대주택의 경우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 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 퍼센트,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40 퍼센트로 하되, 청약금은 입주자모집시에 받고, 계약금은</p>

현행	개정안
<p><u>를 받을 수 없다.</u></p> <p>⑤ (생략)</p>	<p><u>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하게 될 주택의 동·호수를 결정한 후 계약시에 받으며, 중도금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가 도달할 때에 받아야 하고, 잔금은 입주 시나 준공일을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u></p> <p><u>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도 중도금을 받을 수 없다.</u></p> <p>⑤ (현행과 같음)</p>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입주자의 모집시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 8 조제 2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에 대한 승인을 얻었거나 동향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입주자모집에 대한 공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 7 조제 5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제 1 순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제 13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제 1 순위해당자 또는 제 2 순위해당자는 각각 제 13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제 1 순위 해당자 또는 제 2 순위 해당자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 1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제 1 순위 해당자로서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는 제 13 조제 2 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 2 순위해당자로 본다.

**제 4 조 (청약저축등의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1990년 4월 28일 당시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로서 월납입금을 12 회이상 또는 3 회이상 납입할 경우에는 각각 제 13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 1 순위 또는 제 2 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1990년 4월 28일 당시 이미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예치한 후 9월 또는 3월

이 경과할 경우에는 각각 제 13 조제 2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 1 순위 또는 제 2 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인 경우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예치한 후 9월이 경과할 경우에는 제 13 조제 2 항제 2 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 2 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 5 조 (청약예금가입자에 대한 특례)**

1990년 4월 28일 당시 이미 8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예금의 가입자는 당해 청약예금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예금

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의 청약예금 예치금과 변경하고자 하는 청약예금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후의 청약예금 가입일은 변경전의 청약예금 가입일로 보되, 변경은 1회에 한한다.

**제 6 조 (민영주택의 무주택 우선분양에 대한 적용례)** 제 13 조제 2 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 3 조 및 부칙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제 1 순위 해당자로서 당해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  
정보

정기  
구  
독

- 주택정보의 정기구독 기간은 1년입니다.
- 주택정보의 1년 정기구독료는 35,000원입니다.
- 주택정보 정기구독을 신청하려면
  - ① 가까운 은행에 가서 지로용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로카드에 지로번호, 받으실분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구독기간을 명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지로번호 : 7516377
  - ②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우편대체구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우편대체구좌 : 012930 - 31 - 2636892
  - ③ 우편소액환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정기구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547 - 1835, 546 - 4902